

아동 수당에 관한 안내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며, 현황 신고 인정 후, 2024년 6월분 부터 9월분은 **현행제도**, 2024년 10월분 이후는 **신제도**에 기초해서 지급됩니다.

제도개정에 따라 세대 상황 등에 따라서, 신청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뒷면을 확인하시어,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께서는 전자 신청을, 우편 대응을 원하시는 분은, **아동수당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분 이후, 아래와 같이 개정되므로, 확인하신 후, 신청 등 수속이 필요한 분은,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도 안내 (2024년 10월분부터)

(1) 아동 수당 제도 확충 내용에 관하여

①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중학생까지로 했던 지급 대상 연령을 **고등학생 (연대)** 까지 확대합니다.
※고등학생 (연대) = 18세가 되는 년도의 3 월말까지.

② 소득제한 철폐

주된 생계 유지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③ 셋째 아이 가산의 확충

3 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했던 가산 대상을, **셋째 아이 이후의 0 세부터 고등학생 (연대)** 까지로 확대하여, 지급액을 월당 1만 5천엔에서 **3만엔으로 증액**합니다.

또한, 셋째 아이 가산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아동수당 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경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 (연대) 부터 세서 3번째 이후의 아이**를 가산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연대) = 22세가 되는 연도의 3월말까지

④ 아동수당 지급월의 증가

아동수당 지급월이 **4 월, 6 월, 8 월, 10월, 12월, 2 월의 1년에 6번**이 됩니다.

제도 확충 후, 첫 지급일은, **2024년 12월 10일 (화) (2024년 10월 · 11월분)** 입니다.

(2) 제도 확충 후의 지급 금액 (월액) 에 관하여

	3 세 미만	3 세 ~ 고등학생 (연대)
첫째 및 둘째 아이	15,000엔	10,000엔
셋째 아이 이후	30,000엔	

※ 「셋째 아이 이후」란, 22세의 생일 후의 첫 3월31일까지의 양육하는 자녀 중, 세번째 이후의 지급 대상 아동을 말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福岡市 児童手当



로 검색하거나, 우측 2차원 코드로



【문의처】

후쿠오카시 아동 수당 콜센터

TEL : 092-711-5484 FAX : 092-733-2504

접수 : 9 : 30 ~ 17 : 30 (평일만, 월요일은 19 : 00까지)

※2025년 3월 31일 (월) 까지

(3) 신청이 필요한 분

① 증액 신청이 필요한 분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분으로,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연대) 의 아동에 대해서, 과거에 후쿠오카시에서 수급한 적이 없는 분**

※과거에 대상 아동으로서 수급받고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을 다시 양육하게 되신 분은, **증액 신청**을 해 주십시오.

② 「감호 상당 · 생계비 부담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한 분

셋째 아이 가산의 산정기준이 되는 **대학생 (연대) 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시는 분**
 ※대학생 (연대) 이 취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생계 유지자가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면, 양육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 신청은 여기서!



※**고등학생 (연대) 이하의 아동만**을 3명 이상 양육하시는 경우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4) 제도 확충에 관한 Q & A

Q. 특례급부를 수급하고 있는데, 신청이 필요합니까?

A. 특례급부를 수급 중이면, **소득 제한 철폐에 관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대학생 (연대) 이하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이 없으면, 셋째 아이 가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감호 상당 · 생계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Q. 셋째 아이 가산 증액의 대상이 될 예정인데, 신청이 필요합니까?

A. **대학생 (연대)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 있고, 그 중에서 대학생 (연대) 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감호 상당 · 생계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 심사 후에 수당의 증액 지급을 합니다.
 ※**고등학생 (연대) 이하의 아동만**을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Q. 셋째 아이 가산 대상인 대학생 (연대) 자녀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A. 아동을 양육하는 가게 부담의 경감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셋째 아이 가산 대상에 있어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①감호에 상당하는 일상생활상의 돌봄 및 필요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 ②생활비의 상당부분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의 2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5) 아동 수당의 지불에 관하여

아동 수당 지불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당은, 지정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됩니다.

2024년 10월 10일 (목)	← 《2024년 6월분~2024년 9월분》
2024년 12월 10일 (화)	← 《2024년 10월분~2024년 11월분》
2025년 2월 10일 (월)	← 《2024년 12월분~2025년 1월분》
2025년 4월 10일 (목)	← 《2025년 2월분~2025년 3월분》
2025년 6월 10일 (화)	← 《2025년 4월분~2025년 5월분》
2025년 8월 8일 (금)	← 《2025년 6월분~2025년 7월분》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다음과 같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계속해서 수당을 받기 위하여 → **현황 신청**
 ※2022년도부터 현황신청 제출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졌지만, 제도 개정 후도 계속해서, 공적 장부 등을 토대로 심사합니다. 생계중심자의 판단 등을 하므로, 세대상황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감호 (양육) 하는 아동수가 증감하게 될 때 → **금액개정 청구서 · 금액개정 신고**
- **가산 산정대상인 대학생 (연대) 자녀에 대해서, 생계비 등의 부담이 없어졌을 때** → **금액개정 청구서 · 금액개정 신고**
- 수급자와 아동이 별거하게 됐을 때 → **별거 감호 청원서**
- 이혼 등의 사유로, 호적에 이동이 있었을 때 → **이름주소 등 변경 신고**
- 취직 · 퇴직에 의해 가입하는 연금이 변경됐을 때 → **이름주소 등 변경 신고**
- 공무원이 됐을 때 → **수급 사유 소멸 신고**